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I. 주요 사항	■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4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6
	■ 전형 일정	7
	■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8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9
	■ 수능전형 평가방법	10
II. 수시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2
	■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3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4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정원외)	15
	■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16
	■ 학생부종합(대안학교)	17
	■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8
	■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19
	■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21
	■ 학생부종합(기회균형)	22
	■ 학생부종합(SW인재)	24
	■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원외)	25
	■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 (정원외)	26
III. 정시	■ 수능(일반학생)	28
	■ 수능(농어촌학생) (정원외)	29
	■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원외)	30
IV. 재외국민과 외국인	■ 재외국민(3월 입학) (정원외)	32
	■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34
	■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36
	■ 외국인(3월/9월 입학) (정원외)	37

PART 1. 주요사항

1.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4. 전형 일정
5.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7. 수능전형 평가방법

1.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사항																												
전형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한동인재) 신설 : 국내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선발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신설 : 국내외에서 근무한 선교사의 자녀 선발 																												
전체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모집인원 786명 동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형명</th> <th>2026학년도</th> <th>2025학년도</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시</td> <td>학생부교과</td> <td>240명 (30.5%)</td> <td>236명 (30.0%)</td> <td>+ 4명</td> </tr> <tr> <td>학생부종합</td> <td>502명 (63.9%)</td> <td>501명 (63.7%)</td> <td>+ 1명</td> </tr> <tr> <td>기타</td> <td>14명 (1.8%)</td> <td>14명 (1.8%)</td> <td></td> </tr> <tr> <td>정시</td> <td>수능</td> <td>30명 (3.8%)</td> <td>35명 (4.5%)</td> <td>- 5명</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786명 (100%)</td> <td>786명 (1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증감	수시	학생부교과	240명 (30.5%)	236명 (30.0%)	+ 4명	학생부종합	502명 (63.9%)	501명 (63.7%)	+ 1명	기타	14명 (1.8%)	14명 (1.8%)		정시	수능	30명 (3.8%)	35명 (4.5%)	- 5명	합계		786명 (100%)	786명 (100%)	
구분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증감																									
수시	학생부교과	240명 (30.5%)	236명 (30.0%)	+ 4명																									
	학생부종합	502명 (63.9%)	501명 (63.7%)	+ 1명																									
	기타	14명 (1.8%)	14명 (1.8%)																										
정시	수능	30명 (3.8%)	35명 (4.5%)	- 5명																									
합계		786명 (100%)	786명 (100%)																										
전형요소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 [전 전형,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 →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 : [유형1,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 [유형2,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기초생활및차상위) →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기초생활및차상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형명</th> <th>2026학년도</th> <th>2025학년도</th> </tr> </thead> <tbody> <tr> <td>학생부교과(한동인재)</td> <td rowspan="3">학생부교과 70%, 서류 30%</td> <td>-</td> </tr> <tr> <td>학생부교과(지역인재)</td> <td rowspan="4">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td> </tr> <tr> <td>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td> </tr> <tr> <td>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td> </tr> <tr> <td>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td> <td>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td> </tr> </tbody> </table>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전형명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교과전형 성적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일반선택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의 상위 10개 과목 진로선택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의 상위 3개 과목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일반선택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의 전 과목 진로선택 과목 : 서류평가에 반영 																												
전형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일반학생) →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SW인재) 																												
학교폭력 대입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전형 학교폭력조치사항 대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호는 단계별 감점, 4~9호는 부적격 적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개설 학부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증감	
인문사회계열	전 학부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u>60</u>	<u>- 76</u>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학생부교과(한동인재) (신설)	<u>100</u>	<u>+ 100</u>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학생부교과(지역인재)	<u>60</u>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u>20</u>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수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u>220</u>	<u>+ 8</u>	
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공연영상학전공			학생부종합(대안학교)	<u>90</u>	<u>- 5</u>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문화)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u>75</u>	<u>- 30</u>	
이공계열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u>45</u>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신설)	<u>30</u>	<u>+ 30</u>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학생부종합(기회균형)	<u>12</u>	<u>- 22</u>
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학생부종합(SW인재)	<u>7</u>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u>20</u>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u>3</u>		
IT융합대학			[수시]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u>14</u>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AI융합교육원 AI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u>30</u>	<u>- 5</u>	
ICT창업학부 ICT융합전공 AI Convergence&Entrepreneurship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u>0</u>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u>0</u>		
합 계				786명		

* Global Management전공, US & International Law전공, 글로벌융합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 신입생 100%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 모집학부 및 전공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http://admissions.handong.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선발비율	수능 최저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60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00%	-	있음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00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20	1단계: 서류 100%	250%	없음
		학생부종합(대안학교)	90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75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45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30			
		학생부종합(기회균형)	12			
		학생부종합(SW인재)	7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20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3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제한 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30	일괄합산: 수능 100%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0			
합계			786명			

- *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일반학생)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과 수시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농어촌학생)과 정시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4. 전형 일정

- 본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기준입니다. 아래 일정을 기준으로 본교 입학전형 일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일정은 추후 모집 요강에 공지합니다.

구분		일정
수능시험일		2025. 11. 13(목)
수능성적 통지일		2025. 12. 5(금)
수시	원서접수 기간	2025. 9. 8(월) ~ 12(금) 중 3일 이상 재외국민 : 2025. 7. 7(월) ~ 11(금)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2025. 9. 13(토) ~ 12. 11(목) 재외국민 : 2025. 7. 12(토) ~ 12. 11(목)
	합격자 발표	2025. 12. 12(금)까지
	합격자 등록	2025. 12. 15(월) ~ 17(수)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2025. 12. 23(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5. 12. 24(수) 22시까지
정시	원서접수 기간	2025. 12. 29(월) ~ 12. 31(수) 3일
	전형 기간	2026. 1. 21(수) ~ 28(수) (다균)
	합격자 발표	2026. 2. 2(월)까지
	합격자 등록	2026. 2. 3(화) ~ 5(목)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2026. 2. 12(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6. 2. 13(금) 22시까지
추가 모집	접수 · 전형 · 합격통보 마감 · 등록	원서접수/전형/합격자발표/등록 : 2026. 2. 20(금) ~ 27(금) 합격통보 마감 : 2026. 2. 27(금) 18시까지
	등록 마감	2026. 2. 27(금) 22시까지

5.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가. 해당 전형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 1)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100%
- 2)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사회 교과
반영과목	① 공통/일반선택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10개 과목 ② 진로선택과목: 반영교과의 상위 3개 과목
반영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단위 미반영)
활용지표	① 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1~9등급) ②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등급(A, B, C)
교과분류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교과항목에 표시된 대로 반영함. 전문교과의 과학계열은 과학, 외국어계열은 영어, 국제계열은 사회 교과로 반영하되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따름

- 3) 수능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1등급
- 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40점 ~ 최저 10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나. 해당 전형 :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 1)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 2)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구분	내용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교과의 전 과목]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교과의 전 과목] 중 이수 단위가 높은 교과 반영
반영과목	반영교과의 전 과목
반영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학년 구분없이 이수단위로 반영)
활용지표	① 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1~9등급) ② 진로선택과목: 서류평가에 반영
교과분류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교과항목에 표시된 대로 반영함. 전문교과의 과학계열은 과학, 외국어계열은 영어, 국제계열은 사회 교과로 반영하되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따름

- 3) 서류 반영방법 : 교과 종합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종합 평가)
-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 5)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40점 ~ 최저 10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가. 해당 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전(준)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1단계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서류 70%, 면접 30%
- 2)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본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영역	정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업역량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학업능력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탐구능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사물과 현상을 탐구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진로역량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진로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진로 탐색 활동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 경험 및 노력 정도
		경험의 다양성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공동체역량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과 책임감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 위 내용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2026학년도 내용은 추후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면접고사 : 면접고사는 면접위원 2인이 수험생 1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 4) 수능최저 : 없음
- 5)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00점 ~ 최저 7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7. 수능전형 평가방법

가. 해당 전형 : 수능전형 전(준) 전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 3)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 ①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점	95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 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40점 ~ 최저 10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PART 2. 수시

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2. 학생부교과(한동인재)
3. 학생부교과(지역인재)
4.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5.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6. 학생부종합(대안학교)
7.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9.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10. 학생부종합(기회균형)
11. 학생부종합(SW인재)
12.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13.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6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 (① 또는 ②)
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②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1개 영역 1등급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2.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00명

2. 지원자격

201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자

-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일반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각종학교(대안학교 등),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고,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3.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60명

2. 지원자격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3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가능함(각종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지원할 수 없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4.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70%, 서류 30%

5. 전형방법

- 8페이지 참조

5.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6. 학생부종합(대안학교)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90명

2. 지원자격

아래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2개 학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3) 비인가 대안학교 : 국내 소재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함. 단,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10~12학년) 교육과정의 졸업(예정)자를 말함(교육부 기준에 따른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평가에 반영함)
- 2개 학기란 1년 2학기제에서 2개 학기를 의미하며, 1년 3학기제의 경우 총 3개 학기, 1년 4학기제의 경우에는 총 4개 학기를 의미함
- 학기 인정 범위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학기 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7. 학생부종합합(글로벌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75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2)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
- 해외학교 과정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홈스쿨과정 등은 제외함
- 해외이수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재학 기간 중 해당국가에 체류하여야 함
- 지원자격 2)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사이트(<https://www.isi.go.kr/>)에서 확인 가능함
- * 위의 학교 졸업자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없는 자는 국내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45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직업군인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②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 ③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자
- ④ 교도관공무원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자
- ⑤ 환경미화원 :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 ⑥ 집배원 :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일반직, 교육직)의 자녀

- ① 교육공무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 ② 일반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

3)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의 자녀

-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인정하며, 신활력지역의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무 중 또는 시무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미자립 교회는 교단, 단체 등에서 미자립으로 인정한 교회만 인정함
- 한국기독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5)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의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7) 장애인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8) 조손가정의 손자녀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9)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 발급 가능한자) 또는 그의 자녀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9. 학생부종합(선교사자녀)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 한국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0. 학생부종합(기회균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2명

2.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특성화고교 졸업자 :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
- ②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 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단,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됨
 -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됨

3) 국가보훈대상자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사함

4) 서해 5도 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자립지원 대상자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② 제3국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7) 만학도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026.3.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1996.3.1 이전에 출생한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1. 학생부종합(SW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7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2.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13. 학생부종합합(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PART 3. 정시

1. 수능(일반학생)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3.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1. 수능(일반학생)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0명

* 2026학년도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일반학생)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농어촌 학생)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3.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6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기초생활 및 차상위)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기초생활 및 차상위)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PART 4.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재외국민(3월 입학, 정원외)
2.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4. 외국인(3월/9월 입학, 정원외)

1. 재외국민 (3월 입학, 정원외)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4명

나.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350%	100%	-
2단계	100%	70%	30%

- *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
-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00점 ~ 최저 7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여권 사본(부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 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참고>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없음	100%	-
2단계	제한없음	70%	30%

- *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
-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100점 ~ 최저 7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일괄합산	제한 없음	40%	60%

*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56점 ~ 최저 4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라.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3월/9월 입학, 정원외)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다. 전형방법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 없음	100%	
2단계	제한 없음	50%	50%

*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평가 시 조치사항 1~3호는 최고 70점 ~ 최저 5점 감점 적용하며, 4~9호는 부적격 처리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위의 제출서류는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안내 사항

- 부정·편법·약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약용으로 판명될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부정·편입·약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Why
not
Change
the
World?

